

# 고성군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77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3. 13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6. 3. 13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3. 25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녹지공원과장 김주화)

#### 가. 제정이유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(안 제3조)
- 3) 점용 허가 기간 및 점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7조)
- 4) 금지행위 적용대상(안 제8조)
- 5) 준용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#### 다. 참고사항

##### 1) 관계법령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41조, 제49조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, 제23조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  
·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6760(2026. 2. 6.)호]

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289호

- 예고기간: 2026. 2. 10. ~ 2026. 3. 3.(21일간)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호철)

#### 가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.
- 또한 공원 점용허가 기간, 점용료 부과 및 반환 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원 이용 질서 확립과 행정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점용료 면제 규정 중 “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는 적용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므로,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#### 나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3. 25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